





보건복지부				보도자료 4월 21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					
배 포 일				2020. 4. 20. / (총 4매)					
해외의료총괄과	과		장	남	점	순	전	화	044-202-2990
	담	당	자	김	영	지			044-202-2981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

-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4.21)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*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·기준 등을 규정하는,
 - ○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(이하 '의료해외진출법')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4월 21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*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(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)
- □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*(한국보건산업진홍원)이 수행하는 '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'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**에 규정('19.12.3. 법률 개정, '20.6.4 시행 예정)됨에 따라,
 -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,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.









- *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- ** 기존에는 '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'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

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제2항·제4항 ('19.12.3. 공포, '20.6.4 시행 예정)

- 제21조(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·재위탁 등)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□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재위탁 기관)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, 지정신청 접수 등을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2조의2 제1항) 하였고,
 - (재위탁 범위 등) 재위탁하려는 경우,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, 계약 해지,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(안 제12조의2 제2항) 하였다.
- □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,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- < 참고 > 1.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제도 개요 2.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제도 추진체계 및 절차
- < 별첨 >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









참고 1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제도 개요

□ 주요내용

- (목적)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
 - *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)
- (주관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(평가기관) 의료기관평가인증원
- o (평가대상)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
- (평가기준)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(유치실적, 전문의 보유, 의료분쟁예방 등) 및 환자안전체계(안전관리, 진료체계, 감염관리 등)로 2개 영역, 8개 장,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
 - *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"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"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"환자안전체계"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
- (지정절차) 평가지정 신청 → 현지조사 → 조사결과 확인·분석
 → 지정심의위원회* → 지정결과 통보
 - * 평가 및 지정,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-10인 규모로 구성
- (지정혜택)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(마크) 사용 가능,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

<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마크 >















참고 2

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제도 추진체계 및 절차

□ 추진 체계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*(주관기관)은 평가·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며,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(평가기관)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
 - *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에 따른 국제의료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원기관

□ 추진 절차

접수 공고

(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 $\hat{\Lambda}$

평가 신청

(신청 의료기관)

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

(단,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)

Ţ

일정확정 및 접수완료

(의료기관평가인증원)

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

۲Ļ

현지조사(평가)

(의료기관평가인증원)

조사일수: 1.5일, 평가위원 2명

* (평가항목) 2개 영역(**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, 환자 안전체계**)의 153개 조사

Д

지정심의위원회

(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분기별 1회 개최

Ϋ́

지정서 교부

(보건복지부)

지정 유효기간: 2년



